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법령의견제시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법제지원국장이 해당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 00. 0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제지원국에 법령의견제시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제교육과 및 알기쉬운법령팀”을 “법제교육과, 알기쉬운법령팀 및 법령의견제시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알기쉬운법령팀장”을 “알기쉬운법령팀장 및 법령의견제시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령의견제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3.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제4장(제14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36”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5”를 “8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6”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5”를 “86”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의견제시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령의견제시팀장이 법제지원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령의견제시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보좌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u>알기쉬운법령팀</u> 을 둔다.	제9조(법제지원국) ① ----- ----- ----- <u>법제교육과, 알기쉬운법령팀 및 법령의견제시팀</u> -----.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 ----- -----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u>알기쉬운법령팀장</u> 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u>알기쉬운법령팀장 및 법령의견제시팀장</u>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u>법령의견제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u>법적 쟁점 검토·지원</u> 3. <u>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u> <u>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u> 4. <u>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u> <u>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u> <u>업무</u>
제4장 한시조직	<삭 제>
제14조(법령의견제시과) ① <u>법령</u> <u>의견제시과장은 서기관으로 보</u> <u>한다.</u> ② <u>법령의견제시과에 두는 공무</u> <u>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u> <u>같다.</u>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6</u>	<u>237</u>	+1
·	·	·	
·	·	·	
일반직 계	<u>235</u>	<u>236</u>	+1
·	·	·	
·	·	·	
행정사무관	<u>85</u>	<u>86</u>	+1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6</u>	<u>237</u>	+1
·	·	·	
·	·	·	
일반직 계	<u>235</u>	<u>236</u>	+1
·	·	·	
·	·	·	
행정사무관	<u>85</u>	<u>86</u>	+1
·	·	·	
·	·	·	